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

발의연월일: 2020. 6. 3.

발 의 자:구자근·정희용·조경태

김용판 · 김석기 · 임이자

안병길 · 강기윤 · 김승수

김영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이 른바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사례가 52곳으로 연평균 10.4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의 범위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 니하고도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현재 시 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도권 외의 지 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생산량 축소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 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7조 및 제16조의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 나.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제7조제1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 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양도 또는 축소"를 각각 "양도·축소(제2조제 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로 한다.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일 것(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생산량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우선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외사업장 축소를 개시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내복귀"란 <u>해외진출기업</u>	3 <u>다음 각 목</u>
<u>이</u>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	
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u>신설·증설하는</u> 것을 말한다.	
<u><신 설></u>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
	<u>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u>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
	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u>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u>
<u><신 설></u>	나.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

4. (생략)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 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생략)
-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 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 을 것

<신 설>

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
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
<u>설·증설하는 것</u>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1. (현행과 같음)
2
<u>다음 각 목의</u>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으 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 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 <신 설>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 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거 1년간 생산량이 축소개 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 량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생산량을 파악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 당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 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생 산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하 나목에서 같 다)

-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 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 량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 3. (현행과 같음)

②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해외사업장의 청산·<u>양도 또</u> 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 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 서
- 3. (생략)
- ③ ④ (생 략)
-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 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 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 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 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u>양도·축</u>
소(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
는 기업에 한정한다)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5
양도·축소(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
한다)

제16조의2(우선지원)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을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2조제3호가목 에 해당하는 기업을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보다 우 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